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0월 5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10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9. 10. 16)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 설명자 : 청소과장 김태산)

제안이유

○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삼정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2),제2항에 의거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원을 보궐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동의 요구내용

-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비고
선임위원	조성자	여	64.10.15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38-15	잔여임기:2010.02.23

※해촉위원 : 이선호(여) 50.06.28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2-1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문	답변
·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사임한 이유는?	· 위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본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였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의안번호	499	안건명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 대한 의견서
제 출 자	부천시장	의 결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연월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2009. 10. 16)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별표 2)에서 정한 지원협의체의 정원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함

2009. 10. 16.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

의안 번호	제499호
의결 년월일	2009. 11. 23. (제157회)

제출년월일 : 2009. 10. 5.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삼정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동의안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2),제2항에 의거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원을 보궐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동의 요구내용

- 삼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비고
선임위원	조성자	여	64.10.15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38-15	잔여임기:2010.02.23

※해촉위원 : 이선호(여) 50.06.28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2-1

□ 관계법규 참고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관계법규 조문

法	施 行 令																
<p>第17條의2【지원협의체구성원의구성기준및기능 등】</p> <p>①지원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한정재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p>②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p> <p>①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p> <p>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⑧제8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제18조제1항관련)</p> <p>1. 지원협의체의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폐 기 물 매 립 시 설</th> <th colspan="2">폐 기 물 소 각 시 설</th> </tr> <tr> <th>구성면적</th> <th>정원</th> <th>처리규모</th> <th>정원</th> </tr> </thead> <tbody> <tr> <td>100만제곱미터이상</td> <td>21인 이내</td> <td>1일처리능력 300톤이상</td> <td>15인 이내</td> </tr> <tr> <td>100만제곱미터미만</td> <td>15인 이내</td> <td>1일처리능력 300톤미만</td> <td>11인 이내</td> </tr> </tbody> </table> <p>2. 지원협의체의 위원</p> <p>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정원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의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p> <p>비 고 : 1.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해당 시·군·구의회의원 각 4인과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이상으로 한다.</p>	폐 기 물 매 립 시 설		폐 기 물 소 각 시 설		구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이상	21인 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이상	15인 이내	100만제곱미터미만	15인 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미만	11인 이내
폐 기 물 매 립 시 설		폐 기 물 소 각 시 설															
구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이상	21인 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이상	15인 이내														
100만제곱미터미만	15인 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미만	11인 이내														